



의안번호	제36호
------	------

<p><b>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p>
--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5. 23.

#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2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필수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로 한정된 조례명을 도시림 등으로 개정하여 법률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명)
  - ※ 도시림 등 : 도시림·생활림·가로수(법 제19조의2)
- 나. 상위법 근거 조항 명시(안 제1조)
- 다. 조례 내용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 삭제(안 제2조제2호)
- 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맞게 정비(안 제6조)
- 사.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및 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 내용 삭제(안 제13조제2항, 안 제13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기타사항
  -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7. 4. 8. ~ 2017. 4.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산림녹지과

##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따른 가로수”를 “제20조의2, 제21조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로, “가로수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가로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을 “공익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를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가로수”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 도시림 등 “이라 한다)의”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음”을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으로, “심의·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림 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제6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자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제6조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자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9명 이내”를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가로수업무 담당국장”을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제6조제6항 중 “가로수업무 담당으로 하며”를 “도시림 등 업무담당주사가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집하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6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로수위원회, 위원, 임기는 제6조의 개정규

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찬 해
	공 원 팀 장	김 용 정
	담 당 자	유 진 영 (041-746-616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u>가로수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가로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바뀌심기(갱신)” 라 함은 <u>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 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 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같은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u></p> <p>3. ~ 8. (생 략)</p> <p>제4조(관리청) <u>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에 따라 논산</u></p>	<p><u>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20조의2, 제21조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u>----- ----- <u>공익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u> -----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p> <p>3.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리청) <u>법 시행규칙 제24조 및</u> ----- -----</p>

시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논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가로수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비용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기본 식재 수준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바꿔심기(갱신)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논산시 가로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6조(가로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

-----  
-----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  
-----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6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법 제20조의2에

하여 논산시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계획에 대한 심의

<신 설>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신 설>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의 시민단체가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 심의하기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3. -----  
----- 사항

<삭 제>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5. -----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  
----- 6명 이상 15명 이하-----  
-----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추천하는 사람, 가로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⑦·⑨ (생략)

⑩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⑪ (생략)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략)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⑤ (현행과 같음)

⑥ ----- 도시림 등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

⑦·⑨ (현행과 같음)

⑩ -----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

⑪ (현행과 같음)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2. 비용 추계 결과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가. 추계의 전제**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

**나. 추계 결과**

- 세 출 : 3,000,000원/5년
  - 위원수당 :  $100,000\text{원} \times 5\text{년} \times 6\text{명} = 3,000,000\text{원}$
  - ※ 추가되는 위원에 대한 수당 산출

**다. 산출 근거**

-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3. 작성자**

산림공원과장 박찬해

###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600	600	600	600	600	3,000
사무관리비		600	600	600	600	600	3,000
재원조달		600	600	600	600	600	3,000
의 존 재 원							
자 체 수 입	소 계	600	600	600	600	600	3,000
	지방세	600	600	600	600	600	3,00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9.(생략)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 등을 대상으로 도시림 등

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 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 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 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도시림 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 2****법제처 법률 위임조례(필수조례) 통보사항**

법령명	조문	공포일자	법령위임내용	필수조례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제20조의2 (도시림등의조 성관리심의위 원회)	2016. 12.4.	(제20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제4 항)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필수조례

**참고 3**

**법제처 불합리한 사항 통보내용**

조례명	조항	통보내용	조치사항
<p>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3조제2항 , 제3항</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u>가산금은 금전납부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u></p> <p>또한,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u>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u></p>	<p>해당 규정 삭제</p>